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2019년도 재허가 대상 지상파DMB 방송국>

사업자명	방송국명	유효기간
(주)광주방송	KBC 지상파DMB 방송국	2019. 12. 31.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9. 12. 31.
(주)제주방송	JIBS 지상파DMB 방송국	2019. 12. 31.
(주)지원	G1 지상파DMB 방송국	2019. 12. 31.
(주)티비씨	TBC 지상파DMB 방송국	2019. 12. 31.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2019. 6. 30.)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재허가신청서 전체 분량을 적정수준(본문 300페이지 이내)으로 제한함.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DMB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가능)
- 문의 :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DMB 담당(02-2110-1294, young49@korea.kr)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회 (9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0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20점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80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점
계	1,050점**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3년의 허가 유효기간 부여
 - ※ 예외적으로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2019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19년 7월~11월: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
- 2019년 11월~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9년 12월: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재허가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 변경허가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완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일부 자료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